

---

# 1381 해외인증자료

---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베트남의 화장품 규제

### # 베트남 화장품 규제 개요

베트남으로化妆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청에 제품을 신고(Notification) 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 간략한 내용을 기재해 드렸지만, 베트남 화장품 규제에 대한 상세 내용(인허가 규정, 상표등록, 필요 서식, 현지통관 등)은 온라인상에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자료 <https://www.kcii.re.kr/kocei/vie/vie.html> 를 참고해 주십시오.

- 베트남 보건부 산하기관인 의약품청(DAV)에 제품 등록 필수 (취급하는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등록 필요)
- 제품 품질 시험을 위해 제품 당 3개 이상의 샘플과 관련 서류 필요 (신고 주체: 현지 수입업체)
- 수입업자가 베트남 내 해당 지역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화장품 수출이 가능(수입업체가 수입 허가가 없을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
- 성분 규정: 아세안 화장품 규정(ASEAN Cosmetic Directive)에 근거  
<https://aseancosmetics.org/asean-cosmetics-directive/> (영어) 참고
- 베트남 DAV는 2015.08.01부로 파라벤 5종(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을 함유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
- 의약품, 화장품, 농업용 화학품, (비누/치약 등을 포함한) 세면용품 등의 모든 광고 내용은 사전에 정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GMP 필요: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에 따르면 ASEAN 회원국(베트남 포함)에서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s)=(ISO 22716(Cosmetics-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Guidelines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요구
- 승인 유효기간: 5년

**# 제품 등록시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송부할 서류들은 공증을 받아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 확인을 거친 후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대사 확인(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등록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수입업자가 현지에서 작성
- 제조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http://www.kcia.or.kr), 02-785-7985)에서 발급
- 제조업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
-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업체가 발급
- 성분리스트(Listed Ingredients): 전성분의 비율을 %로 표시
-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수입업자에 대해 제조업체가 발급한 수출판매위임장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베트남은 한국과 FTA 협정 체결이 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체에서 발급하거나 관세청/상공회의소에서도 발급 가능 (웹사이트에서 회원등록 후 웹상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상세 내용은 <https://www.kcii.re.kr/kocei/vie/vie.html> 참고

## # 관할 기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의약품 관리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http://dav.gov.vn> / TEL: ++84-(4)-736-6483 / FAX: ++84-(4)-823-4758 / [cqldvn@moh.gov.vn](mailto:cqldvn@moh.gov.vn)

## # 비용

제품 시험 비용이나 컨설팅, 국내에서의 서류 공증/영사 확인 등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베트남 의약품 관리국에 화장품 등록 시에 품목별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별 확인이 필요. 정확한 현지 규제 내용은 베트남 현지의 관할 기관(위에 링크 참고)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 # 라벨링: 베트남어로 표시, 외국어 병기는 가능하지만 베트남어보다 작게 표시

- 제품 명칭
- 성능(효능)
- 상품 책임업체(명칭 및 주소)
- 원산지 국가
- 내용물 용량(중량 또는 부피)
- 전성분 및 성분량
- 로트 번호(Lot number)
-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제품 안정성이 30개월 이내일 경우,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입
- 사용 방법
- 사용상의 안전성에 관한 경고

## 베트남 제품 인증 관련 지원 가능 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www.ktr.or.kr](http://www.ktr.or.kr) / 1577-0091

베트남 인증 담당(과천): KTR 신시장사업팀 정희라 책임연구원 02-2164-0041 [hunks@ktr.or.kr](mailto:hunks@ktr.or.kr)

KTR 베트남 법인: 박진재 지원장

- TEL: +84 24-3219-1365 / 인터넷 전화 02-6959-3799 (국내 시내전화 요금 과금)

[jjpark@ktr.or.kr](mailto:jjpark@ktr.or.kr)

베트남 지사: <https://www.ktr.or.kr/introduce/network/contentsid/506/index.do>

- 베트남 강제인증분야 시험인증 및 인허가 지원 :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퀴어서트(Quacert)와 협력하여 시험, 인증 및 공장심사 원스탑지원
- 화장품, 식품 인허가 지원 : 현지 판매대리인 매칭 및 인허가 지원
- 한·베 기술혁신센터 운영, 기술지원, 규제해소, 사업개발 등
- 베트남 규제에 맞춘 공동R&D지원, 시험인증 컨설팅 및 인허가지원

## 전시회용 물품/샘플 반입 관련 규제

베트남으로의 샘플 송부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KOTRA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 KOTRA 해외시장뉴스 > 전보다 수월해진 베트남으로 화장품 샘플 보내기 (2019.05.21.)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5043>

위 내용에 따르면, 제품고시번호(DAV에의 신고등록번호)가 없는化妆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고등록 번호가 없을 경우에 해당 제품을 현지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위 KTR의 베트남 법인 지원장님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 전시용으로 들어오는 샘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4~5개 정도만 허용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는 전시용으로 베트남으로 들여올 때 뒷돈 UNDER TABLE MONEY를 이용해서 많이 들고 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 특송업체와 상의해야 합니다.
- 전시용으로 가져와서 전시현장에서 판매는 가능합니다.

## ACD (ASEAN Cosmetic Directive) 상호 인정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에 따라 이미 ASEAN 회원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 한 국가에 이미 등록된化妆품을 ASEAN 내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제품등록승인 상호인정 협의(MRA: The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f Product Registration Approval)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려는 해당 국가의 화장품 규제 당국에 간단한 신고(Notification)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 ASEAN Cosmetic Directive

<https://www.aseancosmetics.org/docdocs/directive.pdf> (영어)

### ※ 자료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베트남 화장품 수출,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0-02-27)

<https://me2.do/55RkNcC7>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베트남 아이 메이크업 제품 시장동향 (2024-05-20)

<https://me2.do/F6lUCBsx>

- CIRS > A Comprehensive Guide to Cosmetics Registration in Vietnam (영어, 2019.01.23.)

<http://www.cirs-reach.com/news-and-articles/A-Comprehensive-Guide-to-Cosmetics-Registration-in-Vietnam.html>

## 참 고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 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재해드렸습지만,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현지 규제는 베트남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아래의 KOTRA 무역관이나 한국무역협회 지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콜센터에는 해당 현지 언어(베트남어) 지원 인력이 없어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KOTRA 하노이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hanoi/KTMIUI010M.html>  
TEL: +84-4-3946-0511~8 / FAX: +84-4-3946-0519~20 / [kotrahanoikbc@gmail.com](mailto:kotrahanoikbc@gmail.com)
- KOTRA 호치민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10M.html>  
TEL: ++84-8-3822-3944, 3950 / FAX: ++84-8-3822-3941 / [kotrasgn@hanmail.net](mailto:kotrasgn@hanmail.net)  
호치민수출인큐베이터 TEL: ++84-8-3812-2790/FAX: ++84-8-3812-2791/[info-hcmbi@hanmail.net](mailto:info-hcmbi@hanmail.net)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 <http://hochiminh.kita.net/>  
TEL: ++84-28-3822-4976~8 / FAX: ++84-28-3829-5419 / [kitaohcm@kita.net](mailto:kitaohcm@kita.net)
-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애로상담 및 무역현장컨설팅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coc/problem/serviceInformation.do>

### ※ 화장품 수출관련 국내기관

기관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연락처: 031-8055-8753

<http://www.kcii.re.kr/> [https://www.kcii.re.kr/\\_Document/About/about0401\\_bak.asp](https://www.kcii.re.kr/_Document/About/about0401_bak.asp)

### ※ 관련웹사이트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 글로벌시장동향

[https://www.kcii.re.kr/\\_Document/Center/TREND\\_10L\\_20.asp](https://www.kcii.re.kr/_Document/Center/TREND_10L_20.asp)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

<https://www.kcii.re.kr/cis/>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http://www.allcos.biz/>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 화장품 해외수출문의 > 전문가 문의

[http://www.allcos.biz/expert\\_qna\\_main.html](http://www.allcos.biz/expert_qna_main.html)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 화장품 해외수출문의 > 수출 절차  
[http://www.allcos.biz/expert\\_qna.html?id=AViVzMY1YrOUBQoFU8f-](http://www.allcos.biz/expert_qna.html?id=AViVzMY1YrOUBQoFU8f-)
- 특허 상표 정보검색 서비스  
<http://lupe.kcii.re.kr/>

※ **의약품 수출관련 국내기관**

또한 의약품 수출의 경우,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정보 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전문가 온라인 컨설팅 및 해외제약 전문가 상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https://www.khidi.or.kr/kps>)  
: Khidi > 조직 및 업무 > 제약바이오산업단  
<https://www.khidi.or.kr/kps/org?menuId=MENU00142>
- Khidi > 제약산업정보포털 (<https://www.khidi.or.kr/epharmakorea>)  
: 제약글로벌 진출지원 가이드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1809&siteId=>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https://www.khidi.or.kr/epharmakorea/gpkol>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http://www.kpta.or.kr))  
: TEL 02-2162-8000

▶ **컨설팅 기관**

국내에 규격시험이 가능한 기관이 없으나 해외기관/시험소와 직접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콜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 지원 사업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289](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289)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사업명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2차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일반트랙 2차) 2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536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구분	내용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패스트트랙 인증(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일반트랙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유럽 CE(의료기기 등 패스트트랙 이외에), 중국 NMPA, 미국 FDA 등

\*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 모집 기간

구분	기간
패스트트랙	24년 2월 29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까지(상시 모집) *패스트트랙은 상시 접수(3월-8월)를 통해 월별 간이 심사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
일반트랙	'24년 5월 2일(목) 09:00 ~ 5월 31일(금) 18:00 까지 *일반트랙은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눠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충남] 2024년 체코·헝가리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6648](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6648)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제주]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6653](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6653)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2024년 제5차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지원기업 모집 안내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외인증 시험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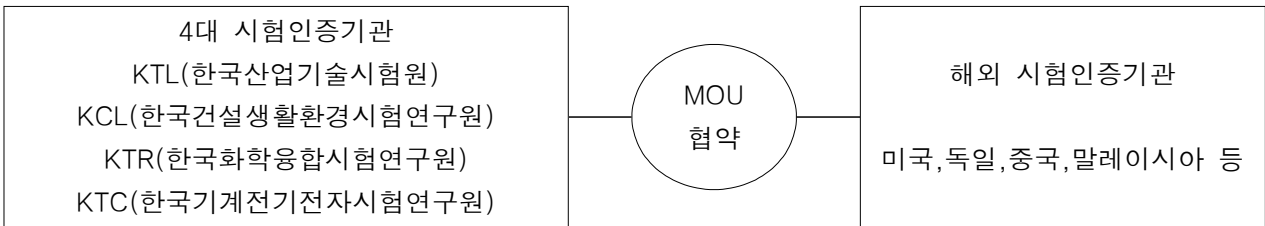
1. 접수 기간 : 2024. 6. 24(월) ~ 2024. 7. 5(금)

\*세부일정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2.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24년 12월까지 납품예정인 수출기업'(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모집 규모 :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4. 지원 범위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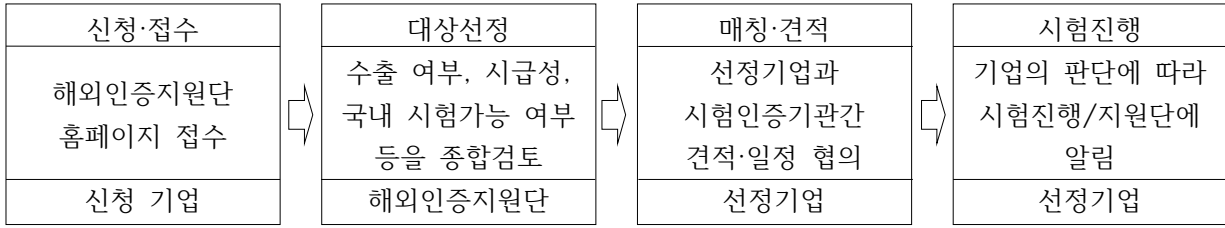


5. 지원내용

- 일반 트랙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6.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신청방법 :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globalcerti.kr/>) -> 공지·안내
- 진행절차 : 신청접수 > 대상선정 > 매칭·견적 > 시험진행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인증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단, 1개 인증 취득시 다수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만 지원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중 1개만 선택 가능(복수 선택 불가)
- 시험 진행 중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시험비용 추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패스트트랙이라도 시험 완료 일정은 기업의 제품 부적합 및 자료 대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이전 4대 시험인증기관에 시험 신청·접수 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시 매칭 지원 취소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여 실제 계약 및 시험 신청 진행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시오.

: <https://www.globalcerti.kr/admin/noticeMngDetail?seqNo=275>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